# 제303회 임시회 <br> 2011.09.30.(금) 

#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$$
\begin{aligned}
& \text { 충 청 북 도 의 회 } \\
& \text { 교 육 위 원 회 }
\end{aligned}
$$

#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괸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전응천 교육의원외 6 인
나. 발의일자 : 2011년 09월 09일
다. 회부일자 : 2011년 09월 15일
라. 상정일자 : 2011년 09월 21일
(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마. 주요내용
O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2. 제안설명 요지
(제안설명자 : 전응천 교육의원)
가. 제안이유
O 보조금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"기관카드 사용 의무화,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, 이의신청" 등의 조문 신설과 현행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- 보완하고,
○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나．주요내용

○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에는 기관카드 사용을 명문화하고，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（안 제8조의2）

○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（안 제 18조의2）

○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정비

## 3．검토보고 요지

## （수석전문위원 ：김왕년）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．9．22．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조 례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＂기관카드 사용 의무화，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，이의신청＂등의 조문을 신설하고，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•보완 및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전체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．

O 안 제 8 조의 2 를 신설하여 제 1 항의＂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기관카드 사용 의무화＂하도록 한 것은 현행 금융거래에서 법인이든 비법인 단체 등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，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법령에 따라＜표 1 ＞과 같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의 사례와＜표 2＞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이에 따른 투명성이 강조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개정이라 생각되며，
<표 1>
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-1189(2009.8.3)
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•규칙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 권고

| 과제명/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치사항 |
| :---: | :--- | :--- |
| 오보금 사용 시 기관카드 사용 의무화 |  |  |
| - 보조금 집행 시 기관카드 사용을 의무 | 보조금 집행 | 조례개정 |
| 화하고, | 투명화 |  |
| - 정산 시 에는 증빙서(영수증 발급 등)을 |  |  |
| 제출토록 규정 |  |  |

<표 2>
충청북도교육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
(단위:천 원)

| 년 도 | 지원 단체수 | 지원금액 | 집행 액 | 비 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2008 | 163 | $1,757,555$ | $1,729,217$ |  |
| 2009 | 114 | $1,681,449$ | $1,665,733$ |  |
| 2010 | 88 | $2,039,609$ | $1,946,194$ |  |

※ 참고 : 충청북도교육청의 '08~09년 행정사무감사, ' 10 년 결산검사 자료

제2항의 "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"하도록 한 것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'상당수 보 조사업이 별도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'는 지적사항을 감안해 볼 때 적정한 개정이라 생각됨.

○ 안 제 18 조의 2 에 "이의신청"을 신설한 것은 민주시민 사회는 자 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

바, 보조금의 교부 결정, 교부결정의 취소, 보조금의 반환 명령 등 교육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,

○ 그 밖에 안 제 14 조 "보조사업의 실적보고" 조문의 자구 정비와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전체 조문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용어, 문장,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 략"
5. 토 론 요 지 : "생 략"
6. 심 사 결 과:"원안가결"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 음"
9. 첨부서류 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"를 "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보조금 관리 조례"로 한다.

제 1 조 중 "제 29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 29 조제 5 항에 따라"로, "등 에 관하여"를 "등에"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보조금이라 함은 교육감이"를 "보조금이란 충청북도교육 감 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보조사업 이 라 합은"을 "보조사업 이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의 "보조사업자라 함은"을 "보조사업자란"으로 한다.

제4조제 1 항제 6 호와 제 2 항제 9 호의 "기타 교육감"을 "그 밖에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 5 조 중 "제 4 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 4 조에 따른"으로 한다.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 (1)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액에 대한 상응하는 비율의 자체부담과 법령, 조례, 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(2)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그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 7 조 중 "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"을 "보 조금 교부 결정 시 제6조에 따른"으로 하고, "부가하여"를 "붙여"로 한 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 8 조의 2 (보조금의 사용) (1)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기관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관카드 사용 이 어려운 인건비 등 교육감이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(2)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"를"교부결정을 한 후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 2 항 중 "교육감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"로, 제2항의 제1호"기타 시설"을 "그 밖의 시 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의"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항에 따라" 로 한다.

제 10 조 중 "조례에 의거한"을 "조례에 따른"으로, "아니된다"를 "아니 된 다"로 한다.

제 11 조, 제 12 조 중 "얻어야"를 "받아야"로 한다.

제 14 조 중 "얻은"은 "받은"으로, "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"를 "실적 보고서와 지출증빙서, 그 밖에"로 한다.

제 16 조 중 "각 호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하고, "지체없이"을 "지체 없이" 로 한다.

제 17 조 중 "다음 각 호에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"로 한며, 같은 조 3 호의 "허위 또는 부정한"을 "거짓 또는 부정한"으로 한다.

제 18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 18 조의 2 (이의신청) (1)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 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그 내용
2. 교부 결정의 취소
3. 보조금의 반환명령
4.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교육감의 처분
(2) 교육감은 제 1 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 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그 결 과를 해당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9 조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하며, "동법시행령"을 "같은 법 시행령"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•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:---: | :---: |
| "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" | "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" |
| 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재정법 시행 | 제1조(목 적 |
| 령」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 | 제29조제5항에 따라--- |
| 북도교육감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 |  |
| 대상,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등에 |
| 제2조(용어의 정의) (1) 이 조례에서 "보조 | 제2조(용어의 정의) (1) 이 조례---"보조 |
| 금"이라 함은 교육감이 장려하고 조성 | 금"이란 충청북도교육감 (이하 "교육감" |
| 할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 | 이라 한다)이 |
| 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 |  |
| (2)이 조례에서 "보조사업"이라 함은 보 | (2) 이 조례--"보조사업"이란 -------- |
| 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 |  |
| 업을 말한다. |  |
| (3)이 조례에서"보조사업자"라 함은 보 | (3) 이 조례-- "보조사업자"란 |
| 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 |  |
| 제 4 조 (보조금의 교부신청서) (1)보조금의 | 제4조(보조금의 교부신청서) (1) 보조금- |
|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|  |
|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|  |
| 한다. | - |
| 1. ~ 5. (생 략)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|
| 6.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| 6. 그 밖에 교육감 |
| (2)제 1 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 | (2) 제 1 항의 |
| 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|  |
| 1. ~ 8. (생 략) | 1. ~ 8, (현행과 같음) |
| 9.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| 9. 그 밖에 교육감 |
| 제5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 교육감은 제4조 | 제5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 ------ 제4조 |
|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| 에 따른 |
|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|  |
| 조사•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 |
| 하여야 한다. |  |
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:---: | :---: |
| 1.~ 4. (생 략) <br> 제6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 (1)교육감은 보 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 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, 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<br> (2)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 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 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 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<br> 제 7 조 (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)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하여 보 조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br> 제8조 (교부방법) (1)공사비는 실적비로 교 부하고 일반사업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 로 교부한다. <br> (2)공공단체에 대하여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제8조의2(보조금의 사용) <신 설> | 1. ~ 4. (현행 과 같음) 제6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 (1) 교육감은-보조금 교부 결정 시 $\qquad$ $\qquad$ $\qquad$ <br>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<br> (2)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$\qquad$ <br> 많은 $\qquad$ <br> 에서 $\qquad$ $\qquad$ <br> 제 7 조(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) $\qquad$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제6조에 따른- $\qquad$ $\qquad$ $\qquad$ <br> 제8조(지급방법) (1) 공사비는 --------- $\qquad$ $\qquad$ <br> (2) 공공단체에 $\qquad$ $\qquad$ $\qquad$ <br> 제8조의 2(보조금의 사용) (1) 보조사 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에는 사업자의 기관카드를 사용하 여야 한다. 다만, 기관카드 사용이 어려운 인건비 등 교육감이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 <br> (2)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|
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:---: | :---: |
|  |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. |
| 제9조(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) (1)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 | 제 9 조(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) (1) 교육감 $\qquad$ 교부결정을 한 후에 |
| 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|  |
|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 경하거나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부 |  |
|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이미 |  |
| 수행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겨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 |  |
|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 할 수 없다. |  |
| (2)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| (2)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|
| 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 |  |
| 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 |  |
| 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|  |
|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|  |
| 필요가 없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 |  |
| 에 한한다. | - |
| 1.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 |  |
| 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| - 그 밖의 시설을 |
| 경 우 | -- |
| 2. (생략) | 2. (현행과 같음) |
| (3)제 7 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 | (3) 제 7 조의 ---- 제 1 항에 따라 |
| 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 |  |
| 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|  |
| 제 10 조 (용도외 사용금지) 보조사업자는 법 | 제 10 조(용도 외 사용금지) |
| 령, 조례의 규정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|  |
| 조건 또는 법령, 조례에 의거한 교육감 | --조례에 따른 |
| 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 |  |
| 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그 |  |
|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| -아니 |
| 된다. | 된다. |
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:---: | :---: |
| 제 11 조 (보조사업의 내용변경) 보조사업자 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 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교육 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br> 제 12 조 (보조사업의 인계 등)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 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br> 제 14 조 (보조사업의 실적보고) (1)보조사 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 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 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br> (2)교육감은 제 1 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 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br> 제 16 조 (보조사업의 보고)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br> 1. ~ 2. (생 략) <br> 제 17 조 (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 재)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토록 명할 수 있다. <br> 1. ~ 2. (생 략) | 제11조(보조사엽의 내용변경)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<br> 제 12 조(보조사업의 인계 등) $\qquad$ $\qquad$ $\qquad$ <br> -- 받아야 --. <br> 제 14 조(보조사업 의 실적보고) (1) 보조 사엽자 <br> -- 받 은 <br> -------------실적 보고서와 지출 증빙서,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교육갑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. <br> (2) 교육감은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<br> 제16조(보조사업의 신고) <br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지체 없이 $\qquad$ <br> 1. ~ 2. (현행과 같음) <br> 제 17 조(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 <br> 재) --------------------다음 각 <br> 호의 어느 하나에 $\qquad$ $\qquad$ <br> 1. ~ 2. (현햄과 같음) |
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:---: | :---: |
| 3．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<br> 4．（생 략） <br> 제18조（감독）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， <br> 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 으며，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． 제 18 조의2（이의신청）〈신 설＞ | 3．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<br> 4．（현행과 같음） 제18조（감독）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<br> 제18조의2（이의신청）（1）보조사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． <br> 1．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그 내용 <br> 2．교부 결정의 취소 <br> 3．보조금의 반환명령 <br> 4．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고 육감의 처분 <br> （2）교육감은 제 1 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춰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의신청을 반 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 당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． |
| 제19조（준용）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 지 아니한 사항은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동법시행령을 준 용한다． | 제19조（준용）그 밖에 $\qquad$ －같은 법 시행령 －－－－． |

## 관 계 법 령 발 췌

## $\square$ 지방 재정 법[시행 2011. 9. 9][법률 제10439호, 2011. 3. 8, 일부개정]

제 17 조 (기부•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) (1)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 체에 대한 기부•보조•출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. 다만, 지 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 정 2011.3.8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(2) 제 1 항 단서에 따른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1.3.8>
5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6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(3) 지방자치단체는 제 1 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,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 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. <신설 2011.3.8>
$\square$ 지방재정 법 시행 렁 [대통령령 제23121호, 2011. 9. 6, 일부개정]

제29조(기부•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) (1) 삭제 <2011.9.6>
(2)법 제 17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그 밖의 공금 지출"이라 함은 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 출을 말한다. <개정 2011.9.6>
(3) 법 제 17 조제 1 항제 4 호에서 "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"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(4) 삭제 <2011.9.6>
(5) 법 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제목개정 2011.9.6]

## $\square$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8조(법령 둥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 (1) 위원회는 법률•대통령령 • 총리령•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•예규•고시•공고와 조례•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• 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 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(2) 제 1 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$\square$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0조 (부패유발요인의 검토) (1)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•대통 령령•총리렿•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•예규•고시•공고와 조례•규칙 (이하 "법령등"이라 한다)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•검토(이하 "부패 영향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 다.

1. 부패유발의 가능성

가.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
나.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.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
2. 법령 등 준수의 용이성

가. 국민•기업•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
나. 법령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
다.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•타당성 여부
3. 행정절차의 투명성

가.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 되는지 여부
나. 준비사항•처리절차•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
4.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
(2)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, 평가기 준,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 2 조제 1 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 다.
(3) 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 29 조제 1 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퐌의 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 29 조제 4 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.
(4) 위원회는 법 제 28 조제 1 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.
(5)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 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(6) 위원희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•개정하고자 하는 법 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 요한 자료의 제츨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,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 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.
(7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•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(8) 위원회는 제 7 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(9) 법 제2조제 1 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둥 내부규 정 (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)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 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